

환경부장관 관할 사업장(제6조의4제1호 관련)

1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
2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
3. 「하수도법」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
4. 「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